

# 감 사 원

## 심 사 결 정

분 류 번 호 2016-심사-626

제 목 유족급여 및 장의비 승인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구  
대표이사 A

처 분 청 근로복지공단 □□북부지사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 소속 근로자 B(이하 “재해자”라 한다)은 2015. 7. 13. 20:20경 업무를 마치고 직장동료들과 저녁회식을 한 후 다음 날 01:00경 서울시특별시 □구에 있는 자택에 귀가하여 거실에서 잠을 자던 중 07:30경 배우자에 의해 숨을 쉬지 않는 상태로 발견되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나. 이와 관련하여 재해자의 처 C은 2015. 12. 16. 처분청에 ‘재해자의 사망이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6. 3. 17. 재해자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결과 등을 고려하여 재해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 나. 청구 이유

(1) 재해자의 사망 전 1주일간의 근로시간이 70시간 12분이 아니라 60시간 32분이고, 사망 전 4주 동안의 1주일 평균 업무시간 58시간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갑작스런 과로로 볼 수 없다.

(2) 또한 재해자의 사망 1주일간의 업무량이 30%이상 증가한 것이 아니라 사망 전 6개월 동안의 1주일 평균 업무 8.3건보다 무려 61% 감소한 3.2건으로 오히려 업무가 감소하였다.

(3) 따라서 재해자의 유족이 제출한 사실과 다른 자료를 가지고 재해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재해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재해자는 청구인 소속 직원으로서 2000. 3. 9.부터 2015. 7. 13.까지 근무하였고, 그 중 2011. 4. 1.부터 2015. 7. 13.까지는 〰〰지사에서 ‘금융권 단말기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청구인 소속 직원은 주 5일, 1일 9시간(출근 08:30, 퇴근 18:30, 점심휴식 1시간)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야간근무 시에는 30분의 저녁식사시간을 부여받고 있다.

(3) 재해자의 처 C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 대리인은 ‘재해자가 과중한 업무와 업무 지연처리에 따른 패널티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재해자의 사망 전 출근기록, 활동보고서 등의 자료에 따른 재해자의 재해발생 전 1주일 동안의 출·퇴근시간, 근무시간 등 근무상황은 [표]와 같다.

[표] 재해자의 사망 전 1주간의 근무상황 명세

일자	요일	출·퇴근 시간			휴식 시간(B)	근무 시간(A-B)	비 고
		출근	퇴근	총시간(A)			
2015. 7. 7.	화	08:36	23:12	15시간 6분	1시간 30분	13시간 36분	청구인은 사무실 출입상황 CCTV 화면 제공이 없다는 사유로 근로시간이 9시간이라고 주장
2015. 7. 8.	수	07:23	20:20	12시간 57분	1시간	11시간 57분	청구인은 평일 출근시간이 오전 8시 30분이고 전산 로그인은 스마트폰으로 집이나 전철 등 어디에서도 가능하므로 근무시간을 8시 30분부터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
2015. 7. 9.	목	08:04	19:54	11시간 50분	1시간	10시간 50분	
2015. 7. 10.	금	07:41	21:20	13시간 39분	1시간 30분	12시간 9분	
2015. 7. 11.	토	14:17	16:32	2시간 25분	-	2시간 25분	
2015. 7. 12.	일	14:21	22:36	8시간 15분	30분	7시간 45분	
2015. 7. 13.	월	08:20	20:20	12시간	1시간	11시간	퇴근 후, 동료직원과 저녁식사를 하였음
<b>계</b>				76시간 12분	6시간 30분	<b>69시간 42분</b>	<b>1주 정상 근무시간 45시간의 154.9%인 69.7시간 근무</b>

• 출근시간: 통합전산시스템상의 출근기록, 기록이 없는 경우 통합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유지보수업무 시작시간  
 • 퇴근시간: 통합 전산시스템상의 유지보수업무 종료시간, 단 2015. 7. 7.은 CCTV상의 퇴근시간

(5) 재해자의 사망 전 유지보수업무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재해자는 재해발생 전 1주일 동안에 [별표] “재해자의 사망 전 1주간 업무처리 명세”와 같이 단말기 장애처리, 정기점검 및 환경공사 관련 철수 및 재설치 등 25건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6)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재해자의 시신을 부검한 후, 2015. 7. 29. 작성한 부검감정서에 ‘재해자의 사망 원인이 급성심장사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판정위원회가 2016. 3. 10. 작성한 “업무상질병판정서”에 따르면, 판정위원회는 재해자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2016 판정 제386호)】**

6.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고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업무시간, 부검감정서, 건강보험수진내역, 건강검진결과, 유족 및 대리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위원회의 순환기내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전문가 의견은

- 발병 전 1주일 이내 주 7일 근무로 약 70시간을 근무하며 주말근무(금융기관 유지보수 업무) 등을 수행하여 업무량이 일상업무에 비해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고, 발병 전 3개월간 주 5일 근무형태로 근무를 수행하였으나 업무시간상 만성과로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 발병전 1주일간 주말에 휴일없이 업무를 수행하여 단기적인 업무과다가 확인되고 특별한 과거 병력이 없는 바, 업무관련성 사망으로 판단됨

○ 이상의 사실 및 전문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보면,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이 건에 관여한 우리 위원회의 다수의견임

(7) 처분청은 2016. 3. 17. 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고려하여 재해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 법령 등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되어 있고, 공단 소속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1-가목-2)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하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6. 7. 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I-1-나목의 규정에 따르면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 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되어 있다.

살피건대, (1) 청구인은 재해자의 사망 전 1주일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32분이고 사망 전 4주 동안의 1주일 평균 업무시간 58시간과 큰 차이가 없어 단기적 과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은 실제 출근시간을 적용하여 근무시간을 산출하여야 하는데도 사규에 따른 출근시간(08:30)을 적용하여 재해자의 사망 전 1주일 근무시간을 산출하였고 실제 출근시간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해자의 사망 전 1주일 근무시간은 인정사실 “(4)항”의 내용과 같이 69시간 42분으로써 이는 1주일 정상 근무시간 45시간의 154.9%에 해당되는 점, ② 사망 전 1주일동안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근무한 점, ③ 인정사실 “(6)항”의 내용과 같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작성한 부검감정서에 사망의 원인이 급성심장사로 기재되어 있고, 판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업무상질병판정서에 “발병 전 1주일간 주말에 휴일없이 업무를 수행하여 단  
기적인 업무과다가 확인되고 특별한 과거 병력이 없는 바, 업무관련성 사망으로 판  
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그리고 청구인은 재해자의 사망 전 1주일간 업무량이 사망 전 6개월 동안의  
1주일 평균 업무 8.3건 보다 무려 61% 감소한 3.2건으로 오히려 업무가 감소하였  
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 “(5)항”의 내용과 같이 재해자가 사망 전 1주일간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망 전 6개월 동안의 1주일 평균 업무처리 8.3건보다 약 200%가 증가한  
25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재해자의 유족이 제출한 사실과 다른 자료를 가지고  
재해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 “(6)항”의 내용과  
같이 ‘고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업무시간, 부검감정서, 건강보험수진내역,  
건강검진결과, 유족 및 대리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위원회의 순환  
기내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전문가 의견’에 따라 판정위원회에서 재해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판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  
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 11 . 20 .

[별표]

**재해자의 사망 전 1주간 업무처리 명세**

일 자	요일	근무장소	업무 내용	
			구분	처리내역
2015. 7. 7.	화	① ☒☒은행 ▷	EM(장애처리)	이물질 제거/주유
2015. 7. 8.	수	① ☒☒은행 ▶	EM(장애처리)	부팅불가, 교체
		② ☒☒은행 ▼	EM(장애처리)	온라인/프로그램 설정
		③ ☒☒은행 ▽	교체설치	교체
		④ 청구인 ㉑지사	기타	내부업무
2015. 7. 9.	목	① ☒◁▷(강북)	EM(장애처리)	부팅불가, 조정/접불체크
		② ▲◁▷ ◀지점	PM(정기점검)	
		③ △◆◆◁▷ ◇지점	PM(정기점검)	
		④ ☒☒은행 ●	교체설치	
		⑤ ☒☒은행 ●	FCO	
2015. 7. 10.	금	① ☒☒은행 ▶	EM(장애처리)	부팅안됨, 조정/접불체크
		② ● ◁▷	EM(장애처리)	카드 READ 안됨, 조정/접불체크
		③ ★ ◁▷	EM(장애처리)	카드부 장애, 조정/접불체크
		④ ★ ◁▷	PM(정기점검)	
		⑤ ☒☒은행 ●●	EM(장애처리)	조정/접불체크
		⑥ ●●은행 ☆역		환경공사 관련 철수 및 재설치
		⑦ ☒☒은행 ♠역		환경공사 관련 철수 및 재설치
		⑧ 청구인 ㉑지사	기타	내부 업무
2015. 7. 11.	토	① ●●은행 ☆역		환경공사 관련 철수 및 재설치
2015. 7. 12.	일	① ☒☒은행 ♠역		환경공사 관련 철수 및 재설치
2015. 7. 13.	월	① ◀◁▷(강북)	EM(장애처리)	지로인식 불가, 이물질제거/주유
		② △♡♡	철수	
		③ △♡♡	철수분 재설치	
		④ ☒☒은행 ▶	교체설치	
		⑤ 청구인 ㉑지사	기타	내부업무(서류정리)
계		25건		

[별지]

## 관계 법령 등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 7. (생략)

○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생략)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①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

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과 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③ (생략)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 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혈관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 12 : 생략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제44조(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 ①법 제78조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 중에 업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5]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제44조 제1항 관련)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가 ~ 바 : 생략

사.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아 ~ 자 : 생략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에서 규정한 질병 외에 업무로 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

2 : 요양의 범위

(이하 생략)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6. 7.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I.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

## 요한 사항

###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 된 경우를 말한다.
-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 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 2 : 생략

### 라. 업무관련성의 판단

- 1) 신체부담업무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2) 1)의 신체부담정도는 재해조사 내용을 토대로 인간공학전문가, 산업위생전문가, 산업의학 전문의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와 함께 재해조사를 하여 판단한다.

## II : 생략